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기 업 부 설 연 구 소 등 의 연 구 개 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통계작성 등의 범위 및 방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통계 작성 등(안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안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려는 기업은 기업 유형별로 2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시설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등(안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인정 신청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 제출, 보완명령서 송부, 2개 이상 신청 시 연구분야 또는 주소지 기준 등을 규정함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안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전담요원등이 아닌 상근 종업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주소지, 연구전담요원등의 근무 장소 요건을 규정함

바. 기술개발 지원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추진 방법, 연구개발인력 지원 사업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안 제13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심사 기준, 지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안 제14조)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제정하고 기술개발인의 날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홍보,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5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지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이 법에 따른 통계 작성, 실태조사,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 변경신고의 수리, 보완 명령 및 청문 실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함

카. 자료 제공의 요청(안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업무 위탁 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또는 취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대상기관 및 자료요청 범위를 규정함

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9. 29. ~ 11. 1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4조(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통계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이하 이 조에서 “통계”라 한다) 작성을 위한 조사대상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인정받은 기업으로 한다.
②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은 기업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진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

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바.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공간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1. 보완 사유
2. 보완 기간
3.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

④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

류)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근 종업원을 둘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제지와 주소제지로 구분하고, 주소제지는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진단
3. 시설·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유치·활용을 위한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교육과정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없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2.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

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기술개발인의 날에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및 독립공간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지원센터 운영규정
3.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 지원센터 인력, 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5.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③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등 육성 계획 수립 지원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당해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원센터 업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운영실적이 운영계획과 다른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중소벤처기업부
5. 산업통상자원부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

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 또는 등록정보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 정보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견기업 정보 또는 등록정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영에 따라 선정받은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3까지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⑧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⑪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⑭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⑯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등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⑯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 한다.

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⑳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㉑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㉒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㉓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㉞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㉟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㊲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㊳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㉕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㉖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8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9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9조제19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

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㉖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㉗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는 다음 표에 규정된 서비스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카지노 운영업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업무정지의 기준(제1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업무정지 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업무정지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500		
다. 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100	200	300
마. 법 제1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5호	500		
바. 법 제10조제6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500		
사.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3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1호	100	150	200
차.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2호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34